

부산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0나57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서재옥, 이석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1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33520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9. 9. 1.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은 각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C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목록 기재 각 납품대금채권의 양수도계약을, 피고와 D 사이에 D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목록 기재 각 납품대금채권의 양수도계약을 각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C와 D은”을 ”C와 D은(이하 통칭하는 경우 ‘C 등’이라고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6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 3, 5, 6행의 각 ”C와 D“ 및 제3면 제9행의 ”C 및 D“을 각 ”C 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부분(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C 등과 피고 사이에 2019. 9. 1.자 영업양수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 등은

무자력 상태에서 각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납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원고와 같은 C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피고와 C 등 사이에 체결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각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등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책임제한의 회복 여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소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 2021간회합101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2021. 11. 9.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행위를 중지시킬 수는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판단’ 부분(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 17,

18, 19, 20행의 각 "C와 D"을 각 "C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사실을"부터 제4면 제3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실, 피고가 G를 운영하면서 C 등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의 미수금 중 일부를 직접 수금하거나 C 등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 등 사이에 실제로 물품거래 관계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C 등의 납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수금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지급한 것은 C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등 사이에 C 등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19. 9. 1. C 등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자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G'를 개업한 사실, 피고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를 운영하면서 C 등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의 미수금 중 일부를 직접 수금하거나 C 등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국세청)에 대한 2021. 5. 6.자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9. 1. 1.부터 2021. 4. 30.까지 자신의 거래처에 합계 140,625,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D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자신의 거래처에 합계 368,286,36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K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와는 2019. 4.경까지, D과는 2019. 8.경까지 각 물품거래를 하였고, 이와 별개로 피고와는 2019. 8. 21.부터 2020. 11. 30.까지의 물품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거래관계로 발생한

물품대금을 보름마다 또는 월말 단위로 지급하여 더 이상 미지급 납품대금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② J 주식회사는 2019. 8.경 C에 대하여는 3,190,000원의, D에 대하여는 2,200,000원의 각 납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G'를 개업한 뒤인 2019. 9. 10.경 위 각 납품대금채무를 C 등에게 직접 변제하였고, C 등에 대한 채무를 피고에게 대신 변제한 적은 없는 점, ③ 피고가 C 등의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채권 중 미수금 일부를 직접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액수와 시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를 개업할 무렵 C 등의 거래처에 대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납품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와 C 등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주문식, 판사 허성민

별지1

목 록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매출채권

순번	발생일	매출처	금액(원)
1	2019.03.31. ~2019.08.31.		44,306,400
2	2019.06.30. ~2019.08.31.		82,397,400
3	2019.03.26. ~2019.08.31.		13,921,800
합계			140,625,600

별지2

목 록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매출채권

순번	발생일	매출처	금액(원)
1	2019.01.31. ~2019.04.30.		39,892,800
2	2019.01.31. ~2019.08.31.		54,014,409
3	2019.01.31. ~2019.04.30.		130,177,600
4	2019.03.31. ~2019.08.31.		42,914,250
5	2019.07.31. ~2019.08.31.		14,309,405
6	2019.04.30. ~2019.06.30.		31,738,100
	2019.02.28. ~2019.04.30.		35,411,200
	2019.03.31. ~2019.08.31.		19,828,600
합계			368,286,364

